



제 42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62호)

2025.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설치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18.

다.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부 민간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진료항목이나 진료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입률이 저조함. 또한 이러한 금전적 부담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의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공개할 수 있는 근거(2023.1.5. 시행)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고시하도록 하는 근거(2024.1.5. 시행)가 마련되었음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설치

개정안은 반려동물진료보험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공적보험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반려동물 진료보험심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5호 및 제3조의3 신설).¹⁾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반려동물진료보험”이란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u><신설></u>	제3조의3(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①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반려동물진료보험 목적물의 선

현행	개정안
	<u>정에 관한 사항</u> <u>2.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의 범위 및 진단·치료 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u> <u>3.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반려동물진료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 <u>1.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u>2.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u>

현행	개정안
	<u>는 공무원</u> 3.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이나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려견 3,244,234마리가 등록되어 있고,²⁾ 매년 등록 동물의 마릿수가 증가하고 있으며,³⁾ 민간기관의 보고서에서도 2023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52만 가구, 1,262만 명에 이를

1)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000만원(연 평균 1,000만원)으로 추계됨

2)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중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로만 한정하고 있어,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의 경우 등록 의무 대상동물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을 받아주고 있음(2023년 기준 41,982마리 등록)

3) 등록 동물 마릿수: ('21) 2,782,811마리 → ('22) 3,054,342마리 → ('23) 3,286,216마리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⁴⁾

반려동물 소유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역시 활성화되고 있는데,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동물병원으로 나타나고 있음.⁵⁾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상위 5개 항목】

(단위: %)

구분	동물병원	반려동물 미용업체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호텔	반려동물 유치원
응답률	80.4	51.8	33.2	16.0	10.6

주: 본 설문조사는 반려견 또는 반려묘 양육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였음
 자료: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2023.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월 평균 병원비 분포는 아래와 같은데, 특히 반려견과 반려묘의 병원비는 각각 월 평균 6.02만원과 3.37만원으로 나타나, 월 평균 양육비(반려견 16.61만원, 반려묘 11.28만원)에서 각각 36.2%, 29.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4) 황원경·이신애,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15일 기준 총 5,638개소의 동물병원이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

【 반려견 또는 반려묘 양육자의 월 평균 병원비 분포 】

(단위: %)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반려견	48.4	26.4	15.6	2.8	6.7
반려묘	72.3	15.0	9.6	1.3	1.8

자료: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2023.

이러한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에 따라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보험(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2023년에 손해보험협회가 조사한 사항을 인용하여, 국내 펫보험 시장은 2015년에는 계약건수 1,826건, 연간 보험료 7억 3,100만원 가량의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 계약건수 71,896건, 연간 보험료 287억 5,400만원 가량의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⁶⁾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되고 있는데, 특히 연간 평균 보험료는 55만원으로 제시되고 있음.

6) 관계부처 합동,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2023, p. 12.

【 반려동물 보험 주요 현황 】

구분		내용
가입 가능연령		생후 2개월 ~ 10세
보험만기		20세
보험료	보험료(연간)	평균 55만원
	갱신주기	1년/3년/5년/7년
보상비율		50 ~ 100%
한도	수술비	150만원 ~ 300만원(일 한도 200만원 ~ 300만원)
	입 · 통원	10만원 ~ 30만원(일 한도 15만원 ~ 300만원)
	연간	500만원 ~ 2,000만원(대개 수술비는 연 2회 제한)
본인부담금		0 ~ 50만원

자료: 김수린, 박혜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KREI 이슈+’ 제2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p. 5.

현재 반려동물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⁷⁾ 등과 같은 진료비 관련 공적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민간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의료비용 부담에도 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며, 그 요인으로는 반려동물보험의 협소한 보장범위, 낮은 보상한도, 반려동물의 가입 가능 연령 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음.⁸⁾

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진료비로 인한 부담 등에 따라, 반려동물에도 공적보험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은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 공적보험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진료보험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첫째,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국가가 관장하는 다른 공적보험 제도와 비교하여 반려동물진료보험을 공적보험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대표적인 공적보험인 8대 사회보험(4대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⁹⁾ 그 목적이

8) 김수린, 박혜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KREI 이슈+’ 제2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p. 4.

9)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 생활 안정·복지 증진·삶의 질 향상 등에 있고,¹⁰⁾

개정안의 반려동물진료보험과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서, 법률상의 심의회를 설치하여 목적물의 선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¹¹⁾의 경우에도 그 목적은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¹²⁾

그러나 개정안의 반려동물진료보험의 경우 그 목적이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바, 타 공적보험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인 국민의 생활 안정·복지 증진·삶의 질 향상 등과 다소

10)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3 각 호의 사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¹³⁾

둘째,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이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수의사법」 제1조¹⁴⁾는 이 법이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법률의 목적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또는 수의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인 수의사·동물보건사 제도, 동물병원, 동물 진료법인, 대한수의사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규정하려는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이 수의사 또는 수의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보험산업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또한, 사람에 대한 의료의 경우 의료 업무에 관한 「의료법」과 보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13)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하여,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부재, 반려동물 등록제도 상 미비점에 따른 정보비대칭성 문제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 자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김창호,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57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pp. 2~3.)

14) 「수의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된 공적보험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의료 분야의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반려동물 진료보험 등의 사항은 「수의사법」이 아닌 별도 개별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¹⁵⁾을 추진 중에 있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공적보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우려가 있고, 국민생명 및 안전 등에 관한 타 공적보험 제도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바,

공적보험의 도입을 전제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한다) 제7조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¹⁶⁾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서 정부

15) 민간 펫보험 활성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 확대, 진료비 조사·공개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데,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별도의 심의회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신설한다면 이는 반려동물진료보험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판단되는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할 필요¹⁷⁾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임.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보다 내실 있게 규정·심의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법」이 아닌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임.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 의 처
02)6788-5427